평가 시행 중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 계획

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

1. 기본워칙

- 가.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수행평가, 지필평가 등을 통해 확인하고, 평가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
- 나.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.
- 다. 원격수업 기간 중 직접 관찰하지 못한 과제물 내용은 평가하지 않음.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·확인한 경우 학생의 성취도, 태도, 참여도, 수행 역량 등을 평가 가능
- 라. 평가(지필 및 수행평가)의 방법 및 반영비율, 횟수 등은 내신성적 산출 결과의 타당성,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도교육청 지침¹⁾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
- 마. 출결 인정 방법과 인정점 부여 방법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. 인정점은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또는 별도의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.

2. 수행평가

- 가. 수행평가 시기·분량·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(집중 또는 분산)에 안정적으로 운영
- 나.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,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,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, 방역 강화 등 조치
- 다. 코로나19로 인한 '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' 방안은 '4. 결시자 성적처리'의 출결처리를 참고하여 교과별 평가계획서의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 르며,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
- ※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전 확보 노력 요망

3. 지필평가

- 가.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년(급) 단위 혼합 고사장 운영을 자제함.
- 나. 지필평가(정기고사) 시행 중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학업성 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 연기 및 일정 조정
- 다.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2
 - (1) 발열검사 또는 시험 시행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
 - (2)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대상별 조치 방법

^{1) (}과목별 수행평가 반영 비율) 20%이상, (지필평가 1회만 실시할 수 있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) 60% 이상

²⁾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세부 행동 방안은 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따름.

- (가) 교직원: 바로 귀가 조치
- (나) 학생: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·검사받도록 안내
 - * 보호자 연락이 안 되거나,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

4. 결시자 성적처리: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
가.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

- (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)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- (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)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 - ① (일부 학생 미응시)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
 - ② (학급 단위 미응시)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, 불가피할 경우 '일부 학생 미응시 '의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
 - ③ (학년(교) 단위 미응시) 시험 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,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

나.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처리 등	인정점
확진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		
	때까지		
의사학생	14일		
조사대상	14일	· 출석인정결석 · 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유증상학생			
자가격리학생	14일		
	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		
	해제될 때까지		
유증상학생	증상발현 후	· 출석인정결석	
	3~4일(증상발현 즉시	· 별도 시험실 제공	
	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)	여부는 학교장 판단	

다.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

대상	조건	출결처리 등	인정점
고위험군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· 출석인정결석 ·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	기준점수의 100%
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관심', '주의'	· 질병결석 · 별도 시험실 제공	기준점수의 80%

		여부는 학교장 판단	
교외체험학습 (가정학습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· 출석인정결석	
		· 별도 시험실 제공	
		여부는 학교장 판단	
기타결석 (감염 우려)		· 기타결석	
		· 별도 시험실 제공	
		여부는 학교장 판단	
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		
	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	미인정 결석	최하점의 차하점
	인정하지 않는 결석		

*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.

※ 위에서 논하지 않은 사안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.